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7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곽규택・김기현・이헌승

박성민 • 박성훈 • 서범수

백종헌 • 주진우 • 김대식

박수영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도 상승하게 되므로 해당 토지의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와 같이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중견 조선사는 빠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보다도 더 많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4호의2신설).

법률 제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점용·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의 징수) ①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	
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	
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	
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4. (생 략) <신 설>

15. (생략)

② ~ ⑧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점용・사용하는 경우

1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